



인천세관



KOREA
CUSTOMS WEEK
2023

수신 관세사회 인천지부
(경유)

제목 「2023년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협조 요청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세관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다양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돌려 주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제조 및 수출사실 증명**만으로 수입시 관세납부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금액**으로 간이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수출지원 환급제도를 관내 중소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붙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세환급제도 이용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 032-452-3305, 3697

붙임 1. 수출환급제도 안내자료 1부. 끝.



인 천 세 관 장



관세행정관 **신민경**

관세행정관 **권종원**

심사정보과장 2023. 5. 15.
유정환

협조자

시행 심사정보과-340 (2023. 5. 15.) 접수

우 2234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1과 (항동7가) / www.customs.go.kr/incheon

전화번호 032-452-3305 팩스번호 032-452-3305 / customsmin@customs.go.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당신,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관세청

I. 관세환급 제도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환특법”)에 의거 환급대상 수출 등을 이행한 경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에 사용 되는 원재료 수입시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동 제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 같아 간략하게나마 이번 안내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 경제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한 방법이 되시길 바랍니다.

II.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수출은 외화획득에 중점을 두어 “일반수출”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 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환특법 제4조를 참조 바랍니다.)

1. 일반 유상수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①항 참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 획득 판매·공사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②항 참조
4. 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③항 참조
5.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④항 참조

III. 환급액 산출방법은?

환특법상 관세환급은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으며,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보다 환급액 산출이 간단하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이 아래에 합치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

- ◆ 대상 :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② 수출물품의 생산자(임가공위탁자 포함)이며, 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이면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 ◆ 요건 : ①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 ② 수출물품의 HSK가 간이정액환급표에 고시된 물품

- ◆ 환급액 산출 방법
수출금액(FOBW) 1만원당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계기된 일정금액 환급

[예시] 수출금액(FOBW) 1백만원, 1만원당 환급액이 80원인 경우

$$\text{환급액} = 1\text{백만원} \div 1\text{만원} \times 80\text{원} = 8,000\text{원}$$

- ☑ **참고사항** : 간이정액환급은 환특법상 환급대상업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을 한 경우 해당 수출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며, 실제 수입원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별환급

- ◆ 대상 : 수출자, 제조자
- ◆ 요건 : 모든 업체에서 선택 가능하며, 중소기업임에도 간이정액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별환급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징 : 환급액 계산이 간이정액환급보다는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환급액 산출가능
- ◆ 환급액 산출 방법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에 해당 하는 관세 환급

[예시] 원재료 1000kg 수입, 관세 50만원을 납부하고 수출물품 생산시 수입원재료 500kg을 사용했을 경우 ⇒ 관세 25만원 환급

- ☑ **참고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2년간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전환이 제한됩니다.

- ☑ **주의사항** : 본지사중 1곳 이상 간이정액 비적용이 등록된 내역이 있으면 본지사 모두 간이정액 환급신청 불가하며 개별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IV.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환특법에 의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지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환특법 제14조 제①항 참조)

V. 관세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은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유상수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 간이정액환급 : 수출물품의 제조자
 - 개별환급 : 제조자 또는 수출자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외화공사
 - 간이 및 개별환급 : 판매자 또는 공사 시행자
3. 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 또는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간이정액환급 :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 개별환급 : 제조자 또는 공급자

VI. 어디에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은 제조장 주소를 관할하는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장이 여러 곳일 경우 개별환급업체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환급신청 가능하지만,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각 제조장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참고사항 : 최초 관할지 세관은 제조장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이 되며, 만약 환급 신청의 편의상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II. 환급신청 전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인은 환급을 신청하기 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을 미리 세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① 환급금계좌신청서	① 환급금계좌신청서
②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서	②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서
③ 소요량산정방법등신청서	③ 소요량산정방법등신청서

❑ 환급금계좌신청서(원본) 제출시 유의사항

- 환급금계좌신청서의 날인은 인감도장 사용 (법인 : 법인인감도장,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감도장)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원본), 통장사본(사본)

❑ 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채신관서

VII. 개별환급시 소요량 산정방법이란?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으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참조 바랍니다.)

IX. 개별환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아래의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 합니다.

<요건-1> 환특법 제3조 참조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단, 간접 투입되는 물품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그 수출물품
- 수입원재료와 상호 대체사용 가능한 국내산 원재료

<요건-2> 환특법 제9조 참조

- 수출물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2009.1.5.에 수출한 물품은 수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9.1.31.로부터 2년 소급하여 2007.1.31. 이후에 수입한 원재료로 환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단,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원재료에 대한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본 안내서에서 언급한 법령 및 고시는

관세법, 관세법령, 「관세법령」 화면에서 검색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